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1. 1.(화) 10:00 < 11.1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31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 문양택 (044-203-4410)
		담당자	사무관 조동후 (044-203-4451)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」 국무회의 의결
-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-

□ **정부**는 **11월 1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**(이하 '통합법률안')」 **이 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**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**으로써, **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이하 '균형발전법')」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(이하 '지방분권법')」을 통합**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그간 **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**되어 **정책의 효과**를 **체감**하기 **어렵다는 지적에** 따라,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**계획과 과제를 연계**하고 **통합적인 추진체계**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.

○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, 부처 협의(5~8월), 입법예고(9.14.~10.24.) 및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(4차례, 9~10월)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,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.

□ 9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**확정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(**계획 통합**) 시·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**'지방시대 종합계획(5년 단위)'을** 국무회의 심의·대통령 승인을 거쳐 **수립**하고 **매년 시행계획(1년 단위)의 이행상황을 평가**한다.

○ (**주요 시책**) 균형발전법, 지방분권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균형발전·지방분권 시책은 물론,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**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'기회발전특구'와 '교육자유특구'의 지정·운영 근거를 신설**한다.

* (기존 시책)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, 기업·대학·공공기관의 지방이전, 권한·사무의 지방이양
(기회발전특구)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-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
(교육자유특구)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·운영되는 지역

○ (**지방시대위원회**)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**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**하도록 하고, 지방시대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의 **이행력 확보**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**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**를 **보고**할 수 있게 한다.

○ (**균특회계**)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'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'를 '**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**'로 **변경한다.**

□ 통합법률안에는 **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**하고, **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**하는 등 **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**하였다.

□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**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**할 예정이다.

□ **정부**는 '어디에 살든 **공정한 기회**를 누리는 **지방시대 실현**'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**통합법률안**이 **'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**할 수 있도록 **최선을** 다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 문양택 (044-203-4410)
		담당자	사무관 조동후 (044-203-4451)
<공 동>	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	책임자	과 장 김상진 (044-205-3301)
		담당자	사무관 박주언 (044-205-3307)
<공 동>	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	책임자	과 장 이혜림 (044-215-7550)
		담당자	사무관 노영래 (044-215-755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통합법률안 주요내용**

□ 추진배경 및 경과

○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**계획과 시책·과제를 연계**하고 **통합적인 추진체계**를 만들기 위해 「균형발전법」과 「지방분권법」 통합 추진

※ (국정과제 120-3) 지역공약 총괄·조정·점검하는 추진 체계 마련

○ 국무회의(5.26.)에서 "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" 발표 이후, 업무보고시 균형위-분권위를 통합한 (가칭)**지방시대위원회** 설치 발표(7.12., 7.26.)

□ 주요 내용

○ **(계획 통합) 균형발전·자치분권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**

- 시·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(5년)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평가

○ **(주요 시책)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·과제로 구성**

- 「균형발전법」·「지방분권법」상 기존 균형발전·지방분권 시책 유지, 현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·교육자유특구 근거 신설

○ **(지방시대위원회)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**

- (구성)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명 포함, 33명 이내의 위원(당연직 16*+위촉 17)

* 기재·교육·과기·행안·문체·농림·산업·복지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·중기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시도지사·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

※ 여가부장관, 법제처장,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보좌관 등 **유관 중앙행정기관장**은 **필요시 회의에 참여** 및 의견 개진 가능

- (심의·의결)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·점검 및 지원 등
- (보고·점검)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,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점검 가능

○ **(균특회계)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**